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00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11. 13.
- 라. 회부일자 : 2024. 11. 13.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 3.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4.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기본방향

-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
- 나.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  
구직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 5. 2025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금명	2024년도 말 조성액 <sup>㉠</sup>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sup>㉡</sup> $e = d + a$	비고
		수입 <sup>㉢</sup>	지출 <sup>㉣</sup>	증감 <sup>㉤</sup> $d = b - c$		
청년미래기금	2,107,794	83,391	316,523	-233,132	1,874,662	

###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5년도 말 조성액 <sup>㉠</sup>	융자금 미회수 채권 <sup>㉢</sup>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sup>㉣</sup>	총 조성규모 <sup>㉤</sup> $d = a + b - c$
청년미래기금	1,874,662	0	0	1,874,662

### 다. 자금 운용 계획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계	83,391	92,750	-9,359
공공예금이자수입	83,391	92,750	-9,359

####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316,523	155,400	161,123
위원회 심의 수당, (홍보물 제작)	1,000	5,400	-4,400
구직청년 취업성공키트 홍보물	3,000	0	3,000
구직청년 자격시험 준비비	90,000	0	90,000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구직청년 면접 준비비	10,000	0	10,000
구직청년 문화힐링비	40,000	0	40,000
독립만세 프로젝트 홍보물	2,000	0	2,000
독립만세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30,000	0	30,000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8,023	0	138,023
청년 행정인턴 면접수당 및 사무관리비	1,000	0	1,000
청년 행정인턴 행사운영비	1,000	0	1,000
청년 행정인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	0	500
청년창업가 사업화지원금	0	100,000	-100,000
대-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0	50,000	-50,000

## 6.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3,391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1,000천원

구직청년 취업성공키트 사업 홍보물 제작비 3,000천원

구직청년 자격시험 준비비 90,000천원

구직청년 면접 준비비 10,000천원

구직청년 문화힐링비 40,000천원

독립만세 프로젝트 홍보물 2,000천원

독립만세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30,000천원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8,023천원

청년 행정인턴 면접수당 및 사무관리비 1,000천원

청년 행정인턴 행사운영비 1,000천원

청년 행정인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천원

**총 316,523천원임.**

- 본 기금 2025년도 계획안은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청년 정책 발굴 및 시행에 더욱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79호, 2023. 10. 12.,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